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10818 손해배상(지)

원 고 1. A회사
2. B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하우원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대길, 조민우, 정경훈

변 론 종 결 2026. 6. 5.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 가. 원고 A회사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3.부터 2026. 7.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B회사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0.부터 2026. 7.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 A회사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회사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B회사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회사에게 13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회사에게 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회사(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E'(이하 '이 사건 제1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B회사(이하 '원고2'라 한다)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인 'F'(이하 '이 사건 제2 프로그램'이라 하고,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C은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천 미추홀구 H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다. 피고 D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 2024. 1. 28.경부터 2025. 1. 23.경까지 이 사건 제1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후 사용하고, 2024. 3. 19.부터 2025. 1. 20.까지 이 사건 제2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후 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5. 11. 13.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각 50만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25고약10191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G' 회사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 직원이고, 'G'은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A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정품 시가 299,904,000원 상당의 I 프로그램 1개를 불법 복제하여 2025. 1. 23.까지 총 196회 사용하였고, 2024. 3. 19.경 동일한 장소에서 B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정품 시가 105,531,340원 상당의 F 2018 프로그램 1개를 불법 복제하여 2025. 1. 20.까지 총 32회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I'항과 같이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의 대표자는 J이고 원고2의 대표자는 K인 사실, 원고1의 대표자 J는 2024. 2. 21. 원고1의 지적재산권 법률고문인 L에게 5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원고1의 라이선스 관련 소송을 위임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2의 대표자 K는 2022. 4. 4. 원고2의 임원인 M, N, O에게 원고2를 대신하여 모든 위임장 및 합의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L는 2025. 3. 11., N는 2024. 4. 23. 법무법인 산음에게 각 원고의 지적재산권 행사 관련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대리에 관한 권한을 3년간 위임하였고, 그 무렵 프랑스 파리 또는 미합중국의 각 공증인으로부터 위 각 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따라서 법무법인 산음은 원고들의 대표자로부터 각 소송 위임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들 회사 임원인 L, N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들을 업무상 이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D과 공동하여¹⁾ 원고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²⁾

이 사건 제1 프로그램의 정품 단가는 299,904,0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제2 프로그램의 정품 단가는 105,531,340원에 이르는데, 원고들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사용한 기간 및 사용 횟수를 고려하여, 원고1은 제1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의 약 35% 상당의 금액인 청구취지 금액, 원고2는 제2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의 약 25% 상당의 금액인 청구취지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

1)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2025. 5. 7.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손해의 범위에 대한 주장을 이와 같이 정리하였다.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각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각 청구취지 금액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개개의 모듈별로 또는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들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들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개별 모듈의 정품 판매가격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뒤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과 횟수를 각 고려하여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고객에 대한 판매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모듈별 구매 수량, 범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정품 판매가격에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판매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들을 1년간 사용하는 권리 제공 방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구 사용 버전의 정품 판매가격의 합산액 중 일정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곧바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의 손해액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2) 앞서 제1항 및 제4.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 업무는 자동차 부품 제조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프로그램을 각 다운로드한 횟수는 1회이며, 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제1 프로그램의 기본 패키지 모듈은 'P'인데 그 정품 가격은 57,457,000원인 점, 이 사건 제2 프로그램의 기본 패키지 모듈은 'Q'과 'R'인데 그 정품 가격의 합계액은 21,266,640원인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1년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매 가능하고, 그중 이 사건 제2 프로그램의 연간 사용금액은 미화 \$4,716달러인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프로그램을 사용한 횟수는 196회이고, 이 사건 제2 프로그램을 사용한 횟수는 총 32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1의 손해액을 20,000,000원, 원고2의 손해액을 7,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1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 일인 2025. 1.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2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5. 1.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